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안

의안 번호	472
----------	-----

제출년월일 : 1995. 11. 17.

발의자 : 홍장표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1년부터 지정관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지정당시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제한구역내 거주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개발제한구역내에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용도지역 특성에 맞도록 차등적으로 개선
- 제한구역내 거주시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재원을 마련 보상을 연차적으로 실시
-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잘못 지정된 점을 인식하고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주민의 생존권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

1. 지정당시 이미 도시화된 지역을 독립된 도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대로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적용을 일반 주거지역 수준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2. 농촌및 기타취락이 형성된 지역은 취락지역으로 지정하여 건축 법대로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적용을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정하여 주민들의 문화.주거생활 공간으로 활용토록 개선하여야 합니다.
3. 독립가옥, 나대지, 잡종지등도 건축법대로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적용을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4. 전답은 토지의 이용을 효과적으로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을 살리면서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여 주민의 소득도 높일 수 있도록 도시학생을 야외학습장, 체육시설, 도시 공원법이 정한 근린공원시설, 청소년수련장, 주말농장, 관광농원, 야외예식장등 문화시설과 특히 병원, 학교시설을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 하여야 합니다.
5. 임야는 보전가치가 없는 기존 대지화된 곳, 주택가 사이에 지목만 임야로 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고 산림이 울창한 나머지 임야는 보존하되, 주민불만이 많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재원을 마련(목적세 신설)하여 연차적인 보상계획을 수립,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임야부터 국가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그린벨트 지역외 임야와 농지의 개발도 억제하도록 허가조건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6. 개발제한구역내의 기존 축사를 축사로 사용치 않는 건물등은 공해없는 업종의 공장및 창고등으로 활용토록하고 기존 공장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과 같이 활용토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7. 향후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시 녹지공간과 공원을 현재보다 넓은 면적을 확보토록 정책적으로 배려하여 도시환경과 휴식공간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건의사항이 관철되기까지 우리 안산시의의원및 시민들은 계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정책당국자들도 제도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1995. 11. 17.

위 건의자 : 안 산 시 의 회 의 원 홍 장 표 외 10인